

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서식]

동물생산업
 동물수입업
 동물판매업
 동물장묘업

변경허가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7일
------	------	-----	---------

신청인 성명(법인명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영업장의 명칭(상호)			
영업의 종류		허가번호	

변경 사항	구분	변경 전	변경 후
	영업자의 성명 (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)		
영업시설			
영업장의 주소			
그 밖의 사항			
변경사유			

「동물보호법」 제6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[]동물생산업, [] 동물수입업, []동물판매업, []동물장묘업 변경허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(뒤쪽)

<p>첨부서류</p>	<p>1. 허가증 2.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제37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(같은 규칙 제4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)</p>	<p>수수료 영업 변경허가 건별로 1만원</p>
<p>담당 공무원 확인사항</p>	<p>1. 주민등록표 초본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) 2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</p>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

-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1항4호에 따른 영업허가 내용(영업의 허가 및 등록번호, 업체명, 전화번호, 소재지 등)을 동물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「동물보호법」 제95조제2항에 따른 동물정보 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